

#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45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18일

발의자 : 김은영 의원

## 1. 제안이유

- 하남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다. 인증기준 등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라.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5.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21년 5월 18일 ~ 5월 26일
-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 6.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가 건축주인 건축물
2. 하남시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4조제1호의 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도시공원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 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